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7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위법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154호, '25.12.2. 개정)」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의 용어가 ‘신기술·신제품 지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사용된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를 위해, 해당 조문에 사용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안-제2조, 제2조의2조, 제2조의3, 제2조의5, 제2조의6, 제2조의7,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2조, 별표 1~5, 서식 1호, 서식 3호~1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kyungdh@korea.kr
- 팩스 : 043-870-5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전화 043-870-5502, 팩스 043-870-5680)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